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법제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업종 및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8423호, 2021. 8. 17. 공포, 2022. 2. 18. 시행)됨에 따라,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신청 전 사전 절차(안 제29조제2항 신설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,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.

나.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
(안 제30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)

- 1)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,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 연장 횟수 계산 시 종전 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지정·고시된 지정기간이나 연장된 지정기간을 포함하도록 함.
- 2)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11. 5. ~ 12. 15., 2022. 1. 00. ~ 1. 00)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

8.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

제7조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: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

8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·조정, 관련 사업의 연계·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: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

제29조제1항 중 “업종 또는 지역”을 “업종(법 제32조제2항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역(법 제32조제3항의 고용위기지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 제2항) 중 “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”를 “기간(이하 “지

정기간”이라 한다)을 함께 고시해야”로 한다.

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로 하고,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지정기간 및 지정기간 연장) ① 법 제32조제6항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③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.

④ 지정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정”은 각각 “지정기간 연장”으로, “지정기간”은 “연장한 지정기간”으로 본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의 지정·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(이하 “종전 특별고용지원업종등”이라 한다)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본다.

② 종전 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정기간이나 연장된 지정기간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간이나 지정기간 연장횟수를 계산할 때 산입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 중 “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”을 “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42조 제1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2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	법 제42조			

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제1항제2호			
3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2조 제1항제3호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전문위원회) 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~ ④ (생략)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전문위원회) ① ----- -----,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</u> <u>회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8. <u>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<u>사항: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8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1조의5에 따라 <u>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·조정, 관련 사업의 연계·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</u>

⑥·⑦ (생략)

제29조(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)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·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: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) ① -----
----- 업종(법 제32조제2항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역(법 제32조제3항의 고용위기지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<신설>

제30조의2·제30조의3 (생략)

③ -----

 ----- 기간(이하 “지정기간”
이라 한다)을 함께 고시해야 --
 -----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30조의2(지정기간 및 지정기간
연장) ① 법 제32조제6항의 지
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정
기간의 연장은 각 1년 이내의
범위에서 3회까지만 연장할 수
있다.
③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지정
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
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.
④ 지정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
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
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정”
은 각각 “지정기간 연장”으로,
“지정기간”은 “연장한 지정기
간”으로 본다.

제30조의3·제30조의4 (현행 제30
 조의2 및 제30조의3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04